https://doi.org/10.5392/JKCA.2017.17.04.461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에 따른 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업무 수행 준수사항 및 시사점

Compliance and Implications for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Policy Trends

주광일, 최선희, 박학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Gwang-il Ju(kiju@kisti.re.kr), Seon-Hui Choi(sunny.choi@kisti.re.kr),
Hark-Soo Park(hspark@kisti.re.kr)

요약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및 민간 전반에 걸쳐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 최근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보호수준 및 관리수준을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개정되는 법령을 쫓아가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준수해야하는 항목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중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 정책 | 개인정보 정책 준수 |

Abstract

Privacy laws are widely enforced throughout the general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s stepping up its annual level of protection and management levels annually. However, in actual field, it has limits to follow the laws that are amended to comply with the privacy laws of the public sector.

Therefore, this study should examine the trends of privacy protection and examine items that require adherence to privacy practices in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it is hope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task itself, as well as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 issu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public in the privacy of the privacy policies.

■ keyword :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Privacy | Information Security | Privacy Policy | Privacy Compliance |

I. 서 론

1. 배경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공공 민간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별법을 통합하여 법 규율 사각지대를 극복하고자 2011년도 시행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접수일자 : 2017년 03월 02일
수정일자 : 2017년 03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3월 23일
교신저자 : 박학수, e-mail : hspark@kisti.re.kr

이관되어 시행되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준수는 이론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대체적으로 준수하게 적용이 되어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의 결과지표도 [표 1]과 같이 이러한 예상에 맞춰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양호한 지표를 지니고 있다[1].

표 1.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준진단 결과

구 분	대상	종합 평균	분 야 별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사고 대책
전체평균	749개	84.98	85.11	83.76	87.09
중앙부처	45개	93.11	92.10	94.32	93.30
광역자치단체	17개	89.46	90.82	92.01	88.22
기초자치단체	226개	85.01	85.07	84.45	86.37
지방공기업	139개	85.32	86.29	83.92	86.67
산하기관	322개	83.45	83.35	81.30	86.84

해당 지표를 살펴보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상회하는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기본점수를 하향 조정한 결과 15년도 대비 16년도 개인정보 수준진단의 전체평균은 15년도 90점에서 16년도 84점으로 하락하였다.

2. 문제점

최근 개정되고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여 발생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는 통신업자 및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담당자가 대부분 겸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낮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121개 주요기관 대상으로 66%의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있고 3~4명이 32.1%, 정보화담당부서 인원 대비 10~20%인 경우가 32.9%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2]. 정보화 대비 정보보안 기준으로 정보보안 대비 개인정보보호 담당 및 조직을 추산해볼 때 개인정보 담당은 0.3명 및 조직 3% 정도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겸직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열악한 개인정보보호 근무환경과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하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할 및 정책준수를 위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개인정보보호법 정책동향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3].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가능한 일반법으로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하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그 밖에 시행규칙과 고시로 이루어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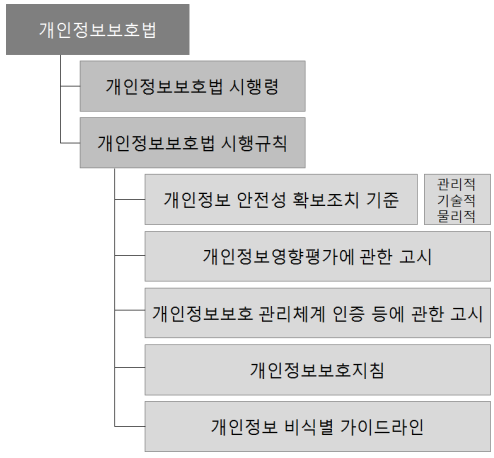

그림 1. 개인정보보호법 법령체계

개인정보보호법은 상위법일수록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법령일수록 자세하

고 강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하위 법령에 대한 근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위 법령의 내용에 대한 준수여부가 상위법령의 준수로 귀결되어 해당 내용에 대한 미준수 시 과태료와 과징금의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기준, 지침 등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법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원칙을 수립하여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국제적으로 프라이버시로 지칭)는 국제표준인 OECD 8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개인정보보호 원칙비교

해외OECD	국내 개인정보보호 원칙(항목)
수집제한	■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 수집(1) ■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처리(6) ■ 익명처리의 원칙(7)
정보정확성	■ 처리목적 내 정확성·완전성·최신성(3)
목적명확	■ 처리목적의 명확화(1)
이용제한	■ 목적 범위 내 적법처리(2)
안전성 확보	■ 권리침해 가능성 고려한 안전한 관리(4)
처리방침공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공개(5)
정보주체참여	■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5)
책임준수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8)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정책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사례를 통해 국내 정책과 비교할 수 있다. 미국은 2013년말부터 세이프하버의 강화조치(making Safe Harbor safer) 협의[3]를 추진해왔다. 미국-EU간 협의의 이슈는 개인정보의 관리수준이 상이한 국가간의 국외이전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EU와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개인정보의 수명주기(Life-cycle)를 두고 단계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는 하위법령(고시 및 지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를 배포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2016년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및 담당자로 이하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변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15-'16년)

구분	기존	변경	비고
개인정보 범죄 처벌강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정으로 취득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3자 제공 포함	'15.7.24 시행 법 70조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몰수추징	'15.7.24 법 74조2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 의무화	내부망이외:암호화 내부망: 암호화 또는 영향평가, 위험도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	내부망 이외:암호화 내부망: 암호화	'16.1.1 법 24조 2
새로운 손해배상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제 피해액 3배이내 ·법정 손해배상제도 ▸300만원 이하 범위	'16.7.25 법 39조, 39조2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바이오정보 암호화	민감정보 모두 암호화	'16. 9월 법 23조2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암호화 이행여부 정기조사	'16. 9월 법 24조 4,5항
개인정보 출처 고지 의무화	정보주체이외로부터 수집 시 정보주체 요구 시 고지	제3자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16. 9월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시행령에 근거	

[표 3]에 따른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은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방향성에 맞춰 국내에서도 이에 맞게끔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9월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용자에 대한 정보 보호 조항이 신설되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4].

Ⅲ. 공공기관 담당자의 정책 준수사항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타국가의 동법과 달리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률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우 몇 가지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5].

표 4. 공공기관에 대하여 달리 정한 규정

의무가 강화된 조항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 공개의무(18조4)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시 공청화·설명회 등 의견수렴 의무(25조3)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위탁 절차요건 강화(25조8) ■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32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의무(33조) ■ 개인정보열람 요구권 행사 편의를 위한 별도의 단일창구 마련(35조1)
의무가 완화된 조항	■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유 확대(15조1항3호)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의 확대(18조2)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공개 의무 완화(30조1) ■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제한·거절 사유 확대(35조4항3호) ■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권 거절 사유 확대(37조2항3호) ■ 통계법에 따라 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 적용이 일부 제외(58조1항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수집-이용-파기)에 맞춘 다음과 같은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법령을 근거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표 5.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준수사항

생명주기	주 요 내 용	관련 조항
수집	• 정보주체(Who) – 만 14세 이상: 일반 동의 –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동의	법22 지침14
	• 개인정보(What) – 일반개인정보: 단순 동의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종교, 건강 등): 별도 동의 – **주민등록번호**: 법적 근거	법23,24 령18,19 지침15
	• 수집방법(How) – 최소한 수집: 과도한 수집 금지 –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구분 – 5대 고지사항 안내(수집목적, 항목, 기간, **동의거부권**, 파기)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별도동의	법15,16
이용(자체, 위탁) 제공	• 자체 제공 – 개인정보취급자 목록 작성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징구	지침18
	• 위탁 제공 –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활용 – 수탁업체 직원교육(개인정보 서약서 징구) 및 정기 점검 – 위탁현황 공개(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	령28 지침19
	• 제3자 제공 – 요청 문서 관리, 제공 시 개인정보 암호화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대장 관리, 제공내역 공개	법18
파기	– 목적 달성, 기관 경과 시 파기 – 복구 불가능한 방법 파기(분쇄 등) – 개인정보 파기대장 관리 – 기관 경과 후 보관 시 분리 보관	법21 령16 지침11

개인정보보호의 하위법령 중 하나인 개인정보 안전성확보조치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시로써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준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6.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안전성 확보조치사항

구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제3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 침입탐지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접속기록 보관(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 (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전산센터·클라우드 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공공기관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위탁관리 부분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준수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표준개인정보처리지침에 의거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준수의 항목에서는 26조에 의하여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의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는 의무, 마지막으로 위탁 종료 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사항에서 해당항목의 삭제를 요하고 있다.

Ⅳ. 정책 준수 및 시사점

1. 개인정보정책강화와 담당자의 역할

공공기관의 경우 행자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6]을 통해서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산하기관 등 76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표 7.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진단지표('17)

분야	진단지표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30)	1. 개인정보보호 기반마련
	2.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30)	5. 개인정보 수집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운영
	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침해대책 수립 및 이행 (40)	9.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10.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재해·재난 대응 절차 수립
	11.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1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표 7]의 경우 각 지표별로 정책부문과 기술부문, 대응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7]. 각각의 분야별로 정책과 기술기반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 담당자의 개인정보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수준진단의 경향은 침해대칙 수립 및 이행의 부분이 매년 강화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공공기관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측면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담당자는 중앙부처에서 배포하는 표준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 및 매뉴얼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연락망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또한 각급 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급의 임원진으로 구성된 보안위원회 및 개인정보위원회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과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대응에 대한 절차서의 배포 및 전직원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IT기술혁신과 개인정보 관리 시사점

마지막으로 IT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기반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빅데이터 개인정보 활용가이드를 배포하였다[5]. 통계법에 따라 처리된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배포로 빅데이터기반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식별화의 세부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각각의 세부기술을 활용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확인 후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업무 추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8].

표 8. 빅데이터기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기법	주요내용	세부기술
가명처리	주요 식별요소 대체	휴리스틱, K-익명화
총계처리	데이터총합 또는 부분화	총계처리, 부분집계
데이터값 삭제	부분 또는 전체삭제	속성값삭제, 부분삭제
범주화	범주의 값으로 전환	범주화, 랜덤올림
마스팅	부분 또는 전체처리	임의잡음추가, 공백대체

이는 강화되고 있는 국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하여 ①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준수 의무 ②강력한 법집행

③명확한 보호 요건 및 투명성 ④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수단[9]에 대한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흐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정부 주요정책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법령을 통해 정책을 추진 및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인하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정책과 현실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헌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지표를 연구하여 중요도 및 인식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주로 수행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담당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당 법령의 변화에 맞는 업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또한, 개인정보 정책담당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단일 기관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준수의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어 좀더 다양한 모집단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사점 및 의미를 도출해내는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 제한된 관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는 타 기관 및 사기업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연구를 통해 공공부문의 관점에서 단순한 정책 수용의 관점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닌 개인정보 관리수준의 향상의 목표를 위해 선행되어져야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정책과 실행부분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개인정보의 주체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사회 전체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행정자치부,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계획,* 2017(3).

[2] 국가정보원 외, *2016 국가정보보호백서,* 2016.

[3] Europen Commission, The EU-U.S. Privacy Shield, The Commission adopterd on 12 July 2016 its decision on the EU-U.S. Privacy Shield, http://eu.europa.eu/justice/data-protection/international-transfers/data-collection/legal/index_en.htm

[4] 행정자치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

[5]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해설,* 2016.

[6] 행정자치부, *2017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계획,* 2017.

[7] 신영진, 정형철, 강원영,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집행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2, No.2, pp.379-390, 2012(4).

[8] 미래창조과학부 외,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활용 안내서, Ver.1.0, 2015.

[9] 윤재석,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 협약(프라이버시 쉴드)과 국내 정책 방향,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6, No.5, pp.1269-1277, 2016.

저 자 소 개

주 광 일(Gwang-il Ju) 정회원

- 2012년 2월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문학사)
- 2014년 2월 : 연세대학교 지식서비스보안(정보 시스템학석사)
- 2015년 8월 ~ 현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개인정보보호 담당

<관심분야>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정보화

최 선 희(Seon-Hui Choi) 정회원

- 1992년 2월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문학사)
- 1995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문학석사)
- 2003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박사수료)
- 1995년 3월 ~ 현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Metrics 및 Altmetrics, 계량분석, 오픈엑세스

박 학 수(Hark-Soo Park) 정회원

- 1989년 2월 : 한남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공학사)
- 1991년 2월 : 한남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공학석사)
- 2002년 2월 : 한남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공학박사)
- 1991년 3월 ~ 현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공학(신뢰도), 분산 컴퓨팅, 보안 및 암호공학